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327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협의체의 구성 위원을 15명 내에서 구성 한다하였으나 다양한 민관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40명내에서 구성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협의체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40명’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의 제1항에서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제안)안 조문대비표>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 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 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정안과 같음)</u></p> <p>제1조(목적) <u>(제정안과 같음)</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li> <li>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li> <li>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li> <li>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p>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 · 간호 ·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li> <li>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li> <li>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li> <li>퇴원자 · 퇴소자에 대한 지역 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li> </ol>	<p>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사업</p> <p>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p> <p>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p> <p>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li> </ul> <p>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p>제6조(통합지원협의체)</p> <p><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심의 · 자문한다.</p> <p>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에 관한 사항</p> <p>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p> <p>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u>협의체는</u>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u></p>	<p>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u>협의체는</u>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u>합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합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②항 <u>(제정안과 같음)</u>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③항 <u>(제정안과 같음)</u>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④항 <u>(제정안과 같음)</u>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⑤항 <u>(제정안과 같음)</u>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b>제8조(위원의 임기)</b>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u>(제정안과 같음)</u></p>
<p><b>제9조(위원의 해촉 등)</b>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등) <u>(제정안과 같음)</u></p>
<p><b>제10조(위원장의 직무)</b>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u>(제정안과 같음)</u></p>
<p><b>제11조(협의체의 회의)</b>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p>	<p>제11조(협의체의 회의)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b></p> <p>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li> <li>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li> <li>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b>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b></p> <p>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12조(교육 및 홍보) <u>(제정안과 같음)</u></p> <p>제13조(협력체계 구축)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p> <p>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u>(제정안과 같음)</u></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u>(제정안과 같음)</u></p>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 및 지원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